

03

안전검사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한산업안전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02-851-6452

지사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Tel : 02-869-7873-5 Fax : 0507-351-7012	서울특별시 전역
부산지역본부	Tel : 051-804-5454 Fax : 0507-351-7021	부산광역시 전역
대구지역본부	Tel : 053-710-3100 Fax : 0507-351-7028	대구광역시 (남구, 수성구, 동구, 북구, 군위군), 경상북도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대구서부지회	Tel : 053-359-2131 Fax : 0507-351-7029	대구광역시 (남구, 서구, 달서구, 달성군), 경상북도 (고령군, 성주군, 칠곡군(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제외))
충부지역본부	Tel : 032-363-3300 Fax : 0507-351-7033	인천광역시 전역
대전지역본부	Tel : 042-628-2160-2 Fax : 0507-351-7044	대전광역시 전역,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논산시, 금산군),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광주지역본부	Tel : 062-943-0156-8 Fax : 0507-351-7039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남도(곡성군, 구례군, 나주시, 담양군, 영광군,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경기지역본부	Tel : 031-241-2206 Fax : 0507-351-7034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지회	Tel : 031-777-9170 Fax : 0507-351-7014	경기도(광주시, 성남시,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하남시)
경기북부지회	Tel : 031-876-0281 Fax : 0507-351-7016	경기도(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파주시, 포천시), 강원도(철원군)
경기남부지회	Tel : 031-665-2416 Fax : 0507-351-7038	경기도(평택시, 오산시, 안성시)
경기서부지회	Tel : 031-382-9988 Fax : 0507-351-7036	경기도(과천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안양시, 의왕시)
안산지회	Tel : 031-402-3998 Fax : 031-402-4096	경기도(시흥시, 안산시)
강원지회	Tel : 033-734-6201-2 Fax : 0507-351-7018	강원도 전역(철원군 제외), 경기도(가평군)
울산지회	Tel : 052-267-1500 Fax : 0507-276-4595	울산광역시 전역
창원지회	Tel : 055-281-3936-7 Fax : 0507-351-7023	경상남도(의령군, 창녕군, 창원시, 함안군)
경남동부지회	Tel : 055-387-1343 Fax : 055-387-1344	경상남도(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경남서부지회	Tel : 055-752-4030 Fax : 055-758-4030	경상남도(거제시,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사천시, 산청군, 진주시, 통영시, 하동군, 함양군, 함천군)
경북북부지회	Tel : 054-451-1221 Fax : 054-455-4513	경상북도(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안동시, 영양군, 영주시, 예천군, 의성군, 청송군, 칠곡군의 석적읍 중리 구미국가산업단지)
포항지회	Tel : 054-277-0163-5 Fax : 054-281-8650	경상북도(경주시, 영덕군, 울릉군, 울진군, 포항시, 포항시 남구, 포항시 북구)
전북지회	Tel : 063-212-4022-5 Fax : 0507-351-7040	전라북도 전역
전남지회	Tel : 061-722-2801 Fax : 061-722-2803	전라남도(강진군, 고흥군, 광양시, 목포시, 무안군, 보성군, 순천시, 신안군, 여수시, 영암군, 완도군, 장흥군, 진도군, 해남군)
제주지회	Tel : 064-753-8237-8 Fax : 0507-351-7043	제주도 전역
충북지회	Tel : 043-236-0395-8 Fax : 043-236-0399	충청북도(괴산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증평군, 진천군, 청주시, 단양군, 음성군, 제천시, 충주시)
충남북부지회	Tel : 041-522-4011-3 Fax : 0507-351-7047	충청남도(천안시, 아산시)
충남서부지회	Tel : 041-669-1480 Fax : 0507-351-7048	충청남도(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서산시,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 한국안전기술협회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1577-7514

지사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할지역
경인지역본부	Tel : 032-429-8504 Fax : 032-429-8506	인천, 부천, 김포
서울지회	Tel : 02-894-8504 Fax : 02-894-8506	서울특별시 전역, 경기도(고양, 파주, 양주, 남양주, 동두천, 의정부, 구리, 포천, 연천, 가평), 강원도(춘천, 화천, 양구, 홍천, 인제, 철원)
경기남부지회	Tel : 031-268-8513 Fax : 031-268-8515	경기도(수원, 화성, 용인)
경기서부지회	Tel : 031-431-3139 Fax : 031-431-0223	경기도(안산, 시흥,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광명)
평택지회	Tel : 031-654-8504 Fax : 031-654-8507	경기도(평택, 오산, 안성)
경기동부지회	Tel : 031-751-3122 Fax : 031-752-4122	경기도(성남, 이천, 여주, 광주, 하남, 양평) 강원도(원주, 횡성, 평창, 강릉, 고성, 동해, 삼척, 속초, 양양, 영월, 태백, 정선)
대전지역본부	Tel : 042-538-3060 Fax : 042-523-9001	대전광역시 전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역 충청도(논산, 공주, 계룡, 금산, 보령, 서산, 홍성, 서천, 부여, 청양, 태안)
충남지회	Tel : 041-576-6446 Fax : 041-576-6447	충청도(천안, 아산, 예산, 당진)
충북지회	Tel : 043-216-8504 Fax : 043-216-8505	충청도(청주, 진천, 보은, 증평, 영동, 괴산, 옥천, 충주, 제천, 단양, 음성)
광주지역본부	Tel : 062-971-8666 Fax : 062-971-7077	광주광역시 전역, 전라도(나주, 담양, 화순, 곡성, 장성, 함평, 영광, 구례)
전남지회	Tel : 061-464-6640 Fax : 061-464-8077	전라도(목포, 신안, 진도, 무안, 영광, 강진, 해남, 완도, 장흥)
전북지회	Tel : 063-244-3122 Fax : 063-244-4122	전라북도 전역
여수지회	Tel : 061-684-8504 Fax : 061-684-8505	여수, 순천, 보성, 고흥, 광양
부산지역본부	Tel : 051-362-8100 Fax : 051-365-3930	부산광역시 전역
울산지회	Tel : 052-221-4090 Fax : 052-221-4092	울산광역시 전역
경남지회	Tel : 055-237-4824 Fax : 055-237-4827	경상남도(창원, 마산, 진해, 함안, 창녕, 의령, 진주, 사천, 거창, 함양, 산청, 하동, 남해, 합천, 통영, 거제, 고성)
경남동부지회	Tel : 055-364-8181 Fax : 055-364-1661	경상남도(김해, 양산, 밀양)
대구지역본부	Tel : 053-588-9303 Fax : 053-588-9306	대구광역시 전역 경상북도(경산, 영천, 청도, 고령, 성주, 군위,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제외))
경북지회	Tel : 054-473-8503 Fax : 054-473-8505	경상북도(구미, 김천, 영주, 상주, 문경, 봉화, 안동, 예천, 의성, 영양, 청송, 칠곡(석적면 중리 국가산업단지))
포항지회	Tel : 054-281-8504 Fax : 054-281-8505	경상북도(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

●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1566-1277

지사명	전화번호 / 팩스번호	관할지역
서울지역본부 (서면실사 실시)	Tel : 02-801-0318 Fax : 02-801-0369	서울특별시, 경기도(하남시, 광명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가평군, 구리시, 남양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의정부시, 포천시), 강원도(춘천시, 철원군, 홍천군, 양구군, 인제군, 화천군)
부산경남 지역본부	Tel : 051-811-6520 Fax : 051-811-6505	부산광역시, 경상남도(양산시)
울산지사	Tel : 052-275-8775 Fax : 052-275-5710	울산광역시
경남동부지사	Tel : 055-237-8860 Fax : 055-212-1081	경상남도(양산제외)
대구경북 지역본부 (서면실사 실시)	Tel : 053-560-1234 Fax : 053-289-3229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인지역본부	Tel : 032-425-0685 Fax : 032-427-0687	인천광역시, 경기도(고양시, 파주시, 부천시, 시흥시, 안산시, 강화군, 김포시)
경기강원 지역본부	Tel : 031-289-3400 Fax : 031-289-3406	경기도(수원시, 화성시, 오산시, 과천시, 용인시, 안성시, 평택시,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이천시, 여주시), 강원도(영월군, 원주시, 횡성군, 정선군, 태백시, 평창군, 강릉시, 고성군, 동해시, 삼척시, 속초시, 양양군)
충청지역본부	Tel : 042-864-3400 Fax : 042-633-0453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계룡시,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천안지사	Tel : 041-523-0454 Fax : 041-551-0455	충청남도(천안시, 당진시, 보령시, 서산시, 아산시,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홍성군)
호남지역본부	Tel : 062-367-8305 Fax : 062-367-7509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

● 안전보건공단 산하기관 연락처 및 관할지역

- 대표전화 : 1544-3089

1	서울광역본부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42 우리빌딩 7층 Tel : 02-6711-2901-4 / Fax : 02-6711-2940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서울특별시, 강원도(철원 제외), 경기도(가평)
2	부산광역본부	주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1763번길 26(부곡동 64-31) Tel : 051-520-0680 / Fax : 501-520-0579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3	광주광역본부	주소 :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82 광주무역회관 Tel : 062-949-8721-3,6 / Fax : 062-949-8768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4	대구광역본부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빌딩 Tel : 053-609-0567 / Fax : 053-421-8627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5	인천광역본부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무네미로 478-1 Tel : 032-510-0531,4 / Fax : 032-578-9202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가평 제외), 강원도(철원)
6	대전세종광역본부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엑스포로339번길 60 Tel : 042-620-5644-6 / Fax : 042-620-3619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7	경기지역본부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Tel : 031-259-7129(1부), 031-259-7289(2부) / Fax : 031-259-7280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경기도 남부(수원,용인,화성,평택,오산,안성 등)
8	제주지역본부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설로 473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Tel : 064-797-7522 / Fax : 064-797-7519 담당업무 : 안전인증, 자율안전확인신고, 안전검사, 자율검사프로그램인정 관할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2023-산업안전보건인증원-759



산업용리프트 안전검사 꼭 받으세요!



안전검사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를 받도록 함으로써 사용 중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주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 유해·위험기계 등의 소유자가 안전 검사를 받아야 함

리프트 안전검사 대상 적용범위

대상	적용범위
리프트	동력으로 구동되는 리프트.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리프트는 제외 1) 적재하중이 0.49톤 이하인 건설작업용리프트, 0.09톤 이하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2) 운반구의 바닥면적이 0.5제곱미터 이하고, 높이가 0.6미터 이하인 리프트 3) 자동차정비용리프트 4)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 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 안전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별표1] 참조

리프트 최초 안전검사 신청 기한 및 주기

- 개정된 안전검사 대상 적용 시행일 : 2024.3.2.부터
 - 0.5톤 미만 산업용리프트의 최초 안전검사 신청기한 : 2024.3.2. ~ 2024.9.2.까지(6개월)
 - 안전검사 주기 : 최초 안전검사 후 매 2년마다
- ※ 단, 설비 설치일이 3년 미만인 산업용 리프트의 경우 최초안전검사는 설비 설치일로부터 3년 내 실시 후 매 2년마다

검사 수수료

안전검사 대상	안전검사 수수료
리프트	62,000원

※ 산업안전보건업무 수수료(고용노동부고시)참조, 부가세 별도

안전검사 신청절차

안전검사 신청서 제출

I 신청인
- 안전검사 신청서 작성 후 FAX, 우편, 방문, 온라인 등의 방법을 통해 신청인 소재지 관할 검사기관 지역사무소로 제출

민원접수

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민원접수 담당부서를 통해 민원접수

검사수수료 입금

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수수료 입금을 위한 가상계좌를 생성하여 신청인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SMS)로 발송 또는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계좌번호 안내

I 신청인
-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로 발송된 가상계좌번호로 수수료 입금
- 또는 안내된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계좌번호로 입금

안전검사일 통지

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안전검사 실시일 확정 후 유선통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세지(SMS) 또는 팩스를 통한 예정통지서 발송 등으로 통지

안전검사 실시

I 각 검사기관 지역사무소
- 신청인이 요청한 설비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실시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발급

I 안전검사 합격증명서, 안전검사 결과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안전검사 신청서

※ 안전검사 신청서 양식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50호서식] 참조

과태료

구분	안전검사 미 실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관련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행정조치	사용중지 명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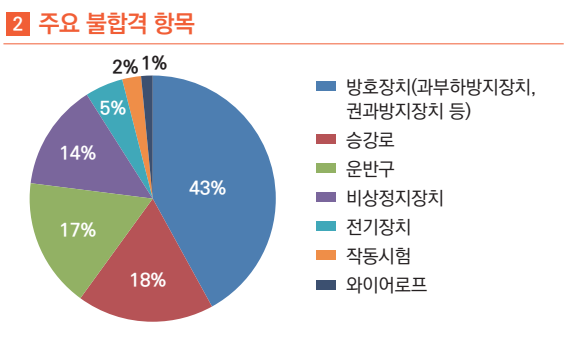
주요 검사항목 및 불합격 내용

1 주요검사항목

- 승강로
- 운반구
- 권상기 등 기계장치
- 권과방지장치
- 과부하방지장치
- 비상정지장치
- 경보장치
- 낙하방지장치 등 3종(개정)

※ 유압식, 랙 및 피니언식 산업용 리프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23-47호) [별표 3] 참조

※ 권동식, 원치식 일반작업용 리프트 : 「안전검사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9-16호) [별표 3] 참조



안전검사기관 현황 및 홈페이지

대한산업안전협회	http://www.safety.or.kr (02-851-6452)
한국안전기술협회	http://www.korsta.or.kr (1577-7514)
한국승강기안전공단	http://www.koelsa.or.kr (1566-1277)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http://www.kosha.or.kr (1544-3089)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사업주가 안전검사대상 위험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해 검사프로그램을 정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자체적으로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는 제도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후 자율안전검사 실시 시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봄

인정절차 및 방법



-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신청서와 관련서류 2부를 첨부하여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 안전보건공단은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제출받은 15일 이내에 인정여부를 결정
- 자율검사프로그램을 신청한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부적합 통지서를 교부 받은 경우 사업주는 안전검사기관에 안전검사를 신청하여야 함

업무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에 따른 검사주기

- 안전검사 주기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 유효기간

- 2년마다 정기적으로 재인정